



# 영국 '2006년 보육법'

## I. 입법 배경

2004년 12월 영국 정부는 잉글랜드(England) 지역의 아동 보육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부모를 위한 선택, 아동을 위한 최고의 출발 : 보육을 위한 10년 전략”(Choice for Parents, the Best for Children : a Ten Year Strategy for Childcare)<sup>1)</sup>이라는 전략기획안을 발표하였고, 2005년 11월 29일에는 웨일즈(Wales) 지역에 대해서 “아동을 위한 보육”(Childcare for Children)이라는 기획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관련기관의 자문을 거쳐<sup>2)</sup> 이 기획안의 이행을 위한 관련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11월 8일에 하원에서 처음 보육법안(Childcare Bill)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후 하원과 상원에서 논의를 거쳐 2006년 7월 11일에 최종적으로 여왕의 승인을 받아

보육법(Childcare Act 2006)<sup>3)</sup>이라는 이름의 법률이 제정되게 되었다. 이 법은 영국에서 아동 보육만에 관한 최초의 입법이다.

이 법을 통해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 및 학습·발달 체제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일하는 부모들은 다양한 보육 선택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보육서비스 제공자들을 적절히 규제함으로써, 부모들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이 법은 2008년까지 500여 개, 2010년까지 1,000여 개의 아동 센터를 건설하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II. 보육법의 구조

보육법은 전체가 111개 조로 되어 있으며, 크

\*\*\* -----

1) [http://www.everychildmatters.gov.uk/\\_files/C7A546CB4579620B7381308E1C161A9D.pdf](http://www.everychildmatters.gov.uk/_files/C7A546CB4579620B7381308E1C161A9D.pdf) 이 기획안에는 부모로 하여금 직장에서의 일과 가정에서의 삶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히고, 14세 이하의 아동을 가진 모든 가정에게 충분하고 적절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목표가 담겨 있다.

2) Choice for Parents, the Best for Children: A Ten Year Strategy for Childcare-Summary of Consultation Responses(March 2005) [http://www.everychildmatters.gov.uk/\\_files/C426C594664BE0CFF7A9A9CD5C3916B7.pdf](http://www.everychildmatters.gov.uk/_files/C426C594664BE0CFF7A9A9CD5C3916B7.pdf)

3) <http://www.opsi.gov.uk/acts/acts2006/20060021.htm>

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법은 웨일즈 지역에만 적용되는 part 2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모두 적용되는 part 4의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잉글랜드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sup>4)</sup>

Part 1	잉글랜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기능 (제1조 ~ 제21조)
Part 2	웨일즈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기능 (제22조 ~ 제30조)
Part 3	잉글랜드의 보육 공급에 대한 규제 (제31조 ~ 제98조)
Part 4	기타와 일반(제99조 ~ 제111조)

보육법에는 부속서(Schedule) 3개가 함께 있고, ‘2006년 보육법에 관한 2007년 보육평가기준’ (The Childcare Act 2006 <Childcare Assessments> Regulations 2007)<sup>5)</sup>과 ‘보육제공자를 위한 2007년 정보, 조언, 훈련 기준’ (The Childcare Providers <Information, Advice and Training> Regulations 2007)<sup>6)</sup>이 하위법령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교육·기술부(the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에서 보육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

든 해설서(Explanatory Notes)도 발간되어 있다.<sup>7)</sup>

### III. 특징 및 적용대상

#### 1. 특징

이 보육법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sup>8)</sup>에게 보육 관련 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에 있다. 이것은 2005년 아동법(Children Act 2005)에서 이미 규정되었던 것인데, 보육법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더욱 확대하고 명확하게 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키고, 아동들 사이의 불평등을 완화시킬 의무, 일하는 부모들에게 충분한 보육을 보장할 의무, 부모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보육관련 수요를 측정하고,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보육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만약 사적 기구나 자발적 영역의 행위자들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들을 지원하고

\*\*\* -----

4) 영국(Un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네 지역으로 구분되며, 각 지역은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 적용 지역이 한정될 수 있다.

5) <http://www.opsi.gov.uk/si/si2007/20070463.htm>

6) <http://www.opsi.gov.uk/si/si2007/20071797.htm>

7) Childcare Act: Explanatory Notes(<http://www.opsi.gov.uk/acts/en2006/2006en21.htm>)

8)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란 잉글랜드의 경우에는 지방의 카운티(County)와 디스트릭트(District), 대도시 디스트릭트, 런던의 버로우(Borough) 등으로 구성되며, 웨일즈의 경우에는 카운티와 카운티 버로우를 말한다(제106조). 우리와 단순 비교하기 힘든 복잡한 시스템이지만 대략 우리의 시·군·구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적절히 배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로써 보육영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적 기구, 자발적 기구 등과 협력하여 보육정책 전반을 조정하고 규율하는 전략적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 2. 적용대상

이 법에서 말하는 ‘보육’ (Childcare)에는 아동<sup>9)</sup>에 대한 교육과 어린이를 감독하는 다른 행위들이 포함된다(제18조 제 2 항).<sup>10)</sup> 하지만 영아가 아닌 등록된 학생을 위하여 학교시간 동안 학교에 의해 제공된 교육이나 아동을 감독하는 다른 어떤 행위라든가 건강 보호(제18조 제 3 항), 아동의 부모나 의붓 부모, 기타 양육 책임자, 아동의 친척, 아동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양육 부모(a local authority foster parent),<sup>11)</sup> 자발적 조직(voluntary organisation)<sup>12)</sup>에 의해 옮겨진 아이와 함께 있는 양육 부모, 그리고 아이를 사적으로 양육하는 사람 등에 의해 제공되는 양육(제18

조 제 4 항), 어린이 집(a children’s home),<sup>13)</sup> 보호소(care home),<sup>14)</sup> 병원, 거주 가족 센터(residential family centre)<sup>15)</sup> 등에서 제공되는 양육과 위의 설비에서 고용된 사람에 의해서 제공되는 양육, (제18조 제 5 항, 제 6 항) 소년원(young offender institution)이나 안전훈련센터(secure training centre)에 구금되어 있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양육 등은 보육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제18조 제 7 항).

## IV. 주요 내용

### 1. Part 1 : 잉글랜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기능(제 1 조 ~ 제21조)

보육법의 Part 1은 잉글랜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된 새로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는 아동을 위한 결과의 향상, 충분한 보육의 보장, 부모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세 가지 영역에 걸쳐 있다. 이러한 의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 -----

9) 아동(Child)이란 18세 이전의 사람을 말한다. 아동법(Children Act 1989) 제105조 제 1 항 참조.

10) 웨일즈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Part2 부분에서의 보육 개념 정의는 다소 다르다(제30조 참조).

11) 지방자치단체는 그들이 돌보고 있는 아이들을 그들의 가족, 친척, 다른 적당한 사람에게 보냄으로써 그들을 위한 주거와 생계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이에 따라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그가 만약 그의 부모거나 부모의 책임을 지고 있거나 거주 명령이 내려진 사람이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 양육 부모(a local authority foster parent)라고 부른다. 아동법(Children Act 1989) 제23조 참조.

12) 공공기구도 아니면서,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조직을 말한다. 아동법(Children Act 1989) 제105조 제 1 항 참조.

13) 3명 이상의 아동을 한꺼번에 수용하고 보호하고 있는 집을 말한다. 아동법(Children Act 1989) 제63조 제 3 항 참조.

14) 환자, 장애인, 알콜·마약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에게 보육이나 간호를 제공하는 숙소로서, 병원이나 진료소, 어린이 집이 아닌 곳을 말한다. 건강보호기준법(Care Standards Act 2000) 제 3 조 참조.

15)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에 대해 제공되는 숙소로서, 아동들의 필요에 반응하고, 그들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부모들의 능력이 감시되고 평가되며, 필요한 경우 부모들에게 조언, 지도, 상담 등이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 건강보호기준법 제 3 조 참조.



아동과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의 계획, 집행, 전달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전략적 역할을 잘 보여준다. 이 법에서 제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들의 특별한 환경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적용되며, 후속 법을 변경할 필요 없이 향후의 변화·발전을 허용하고 있다.

먼저 Part 1은 아동들을 위한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 복지에 관련하여 아이들 사이의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잉글랜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제시한다(제1조 제1항). 여기서는 2003년 9월에 발표된 ‘모든 아동 문제들’ (Every Child Matters)이라는 제목의 녹서(green paper)에 정의된 다섯 가지 결과에 따라서 ‘아동의 복지’를 정의하고 있다.<sup>16)</sup> 이 다섯 가지는 ① 육체적·정신적 건강과 정서적 행복, ② 해악과 무시로부터의 보호, ③ 교육·훈련·오락, ④ 아동들의 사회에 대한 공헌, ⑤ 사회적·경제적 복지 등을 말한다(제1조 제2항). 또한 유아(young child)들을 위한 서비스들(유아보육의 공급, 건강 서비스, 사회 서비스, 고용서비스 등)이 통합된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즉, 국립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와 취업센터(Jobcentre Plus)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접근가능하고 통합된 방법으로 아동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부모와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부모를 위한 충분한 보육을 제공하여야 한다(제6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보육 공급의 수요를 파악하여, 지역 보육 제공자들에게 정보와 조언과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그들이 제공하는 보육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영아보육의 공급의 일정한 양은 비용없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제7조).

이외에도 Part 1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모와 부모 예정자를 위한 서비스를 설정하고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들과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 시설, 출판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육에 관한 조언과 도움을 주어야 한다(제12조, 제13조).

## 2. Part 2 : 웨일즈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기능 (제22조 ~ 제30조)

Part 2는 웨일즈 지역 지방자치단체에게 부과된 새로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웨일즈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지역 부모들이 일하거나 직장을 얻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보육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진다(제22조 제1항). 특히 보육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웨일즈의 지방자치단체는 아

\*\*\* -----

16) Childcare Act: Explanatory Notes, 1쪽.

동보육과 관련하여 워킹 텍스 크레딧트가 지급 되는 아동보육의 공급, 장애 아동을 위해 적합한 아동 보육의 공급, 웨일즈어(Welsh Language)의 사용을 포함하고 있는 아동보육의 공급 등에 대한 부모의 요구를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제22조 제2항). 또한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웨일즈 지방자치단체는 웨일즈 의회(the Assembly for Wales)가 때때로 제공하는 지도를 고려해야만 한다(제22조 제3항).

또한 웨일즈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아동보육을 공급하거나 그것을 제안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그 영역의 다른 사람들과 협의할 수 있으며, 직접 아동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제23조 제1항). 여기에는 또한 재정적 도움이 포함될 수 있다(제23조 제2항). 이외에도 웨일즈 지방자치단체들은 해당 지역의 아동보육 공급, 이 지역의 부모(예정자)나 아동 또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 시설, 출판물에 관련한 정보, 조언, 도움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제27조).

### 3. Part 3: 잉글랜드의 보육 공급에 대한 규제

Part 3은 앞서 언급한 영국의 보육정책 전략기 획안인 “부모를 위한 선택, 아동을 위한 최고의 출발 : 보육을 위한 10년 전략”에서 제시된 보육에 대한 규제·조사의 개혁조치들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적 규정을 담고 있다. 이 기획안에서는

유아 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규제와 조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체제를 도입하고, 탄생에서 5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교육·발달을 뒷받침하는 양질의 교육·보육을 위한 통합적 체제를 만들어내도록 하고 있는데, 보육법에서는 이를 위한 법적 조치를 담고 있는 것이다.

Part 3은 5개의 장(Chapter)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장은 수석조사관(chief inspector)<sup>17)</sup>의 일반적 기능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장은 0세에서 5세까지의 영아들에 대한 보육 공급의 규제, 세 번째 장은 8세 이하의 영아들에 대한 보육 공급의 규제, 네 번째 장은 자발적 등록에 관한 것, 다섯 번째 장은 공통의 보육 공급들에 대한 것을 담고 있다. 이것들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제1장 : 수석조사관의 일반적 기능

수석조사관은 정부에게 잉글랜드의 영아 보육 공급의 규제가 그것을 제공받는 아동 복지의 기여에 대한 정보, 그 공급의 질과 기준에 대한 정보, 그것을 제공받는 아동들의 수요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그 공급과 관련된 지도와 관리의 질은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수석조사관은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 자문을 해야 한다(제31조).

수석조사관에게 부여된 또 다른 중요한 임무는 두 가지 종류의 보육 공급자 등록부(register)를 유지하는 것이다(제32조). 첫 번째 등록부는 ‘영

\*\*\* -----

17) Chief Inspector란 잉글랜드의 Her Majesty's Chief Inspector of Schools를 말한다(제98조 제1항).



아 등록부' (the early years register)<sup>18)</sup>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정 내 영아 보육공급자들(childminder)<sup>19)</sup> 또는 제2장의 다른 영아 보육 공급자들로 등록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등록부이다. 두 번째 등록부는 '일반 보육 등록부' (the general childcare register)라고 하는데 이것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이 등록부의 첫 번째 부분(part A)은 가정 내 기아 보육공급자들(late years childminders)<sup>20)</sup> 또는 제3장에 규정된 다른 유아 보육 공급자로 등록된 자들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부분(part B)은 가정 내 보육 공급자들 또는 제4장의 다른 보육 공급자로 등록된 사람들(제2장과 제3장에 의해 등록될 필요가 없는 공급자들의 임의적 등록)에 대한 것이다.

(2) 제2장 : 0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보육 공급의 규제

제2장은 영아 보육 공급자들에 대한 등록과

그들이 충족해야 할 요구조건, 그리고 영아보육 공급자에 대한 조사, 규제에 대한 조치를 담고 있다.

잉글랜드에서는 영아의 가정 내 보육공급자(childminder)로서 영아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영아보육을 제공할 수 있다(제33조 제1항). 하지만 정부는 명령을 통해 특정한 경우(예컨대, 특정인, 특정 아동, 보육의 성질, 그것이 제공되는 장소, 시간, 설비 등)에는 이 조항이 적용이 면제되도록 조치할 수 있다(제33조 제2항, 제3항).<sup>21)</sup> 영아 등록부에 등록을 원하는 자는 수석조사관에게 신청한다(제35조 제1항). 등록신청서에는 '기준'<sup>22)</sup>에 규정된 정보, 수석조사관이 제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한 다른 정보, 기준에 정해진 등록비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제35조 제2항). 수석 조사관은 등록자가 보육법 제75조에 규정된 자격요건<sup>23)</sup>을 갖추고 있고, 기준에 규정된 등록요건에 부합하

\*\*\* -----

- 18) 이 법에서 "early years provision"은 영아(young child)를 위한 보육의 공급을 뜻하므로(제20조, 제96조, 제98조), "영아 보육의 공급"이라고 하면 적당하고, 따라서 "early years register"는 "영아 등록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영아(young child)는 영아는 출생 후 5세가 되는 날을 지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9월 1일 이전까지의 아동을 말한다(제19조, 제98조).
- 19) Part 3에서는 보수를 받고 가정 내에서 3명 이하의 어린이를 보육하는 "childminding"과 기타 다른 보육을 구분하고 있다(제96조). 아래에서는 childminding을 편의상 "가정 내 보육"이라고 칭한다.
- 20) 이 법에서 "late years provision"은 다섯 살이 된 날 이후에 맞이하는 첫 번째 9월 1일로부터 규칙에서 정한 날까지의 아동들(편의상 '유아'라고 칭할 수 있음)에게 제공되는 보육을 말하므로, (제96조 제6항, 제98조 제1항) "유아 보육의 공급"이라고 하면 적절하다.
- 21) 이상의 등록규정은 가정 내 보육 공급자 이외의 다른 보육공급자에게도(약간의 차이를 두고) 적용된다(제34조).
- 22) 이하에서 '기준' (regulations)이란 정부가 보육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한 하위법령을 말한다(제21조와 제98조). 현재 제정된 기준으로는 The Childcare Act 2006(Childcare Assessments) Regulations 2007과 The Childcare Providers (Information, Advice and Training) Regulations 2007 등이 있다.
- 23) 보육법 제75조에 따르면, 아동보호법(Protection of Children Act 1999)에 의해 아동관련 일 부적합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나, 규칙에 정해져 있는 종류의 범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나 그와 관련해 경고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고, 앞으로 부합할 것이 예상되면, 등록을 승인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제35조 제3항, 제4항). 등록에 관련하여 기준에서 정할 수 있는 요구사항에는 신청자, 영아 보육이 제공되는 장소, 그 장소의 영아보육 설비, 그 장소에서 아동들을 돌보게 될 사람, 그 장소에 있을 수 있는 다른 사람에 관한 요구조건 등이 포함될 수 있다(제35조 제5항).

등록된 보육공급자에 의해 영아 보육 공급을 받는 영아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명령을 통해 제41조의 학습·발달요구조건(learning and development requirements)을 정할 수 있고, 규칙을 통해 제43조의 복지요구조건(welfare requirements)을 정할 수 있다(제39조 제1항). 이러한 요구조건을 ‘초기 단계’(The Early Years Foundation Stage, EYFS)라고 부르며(제39조), 등록된 보육 공급자들은 자신들의 영아 보육 서비스가 이러한 요구조건들에 부합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제40조).

한편 수석조사관은 규칙에 정해질 수 있는 간격으로 보육 공급에 대해 조사해야 하며, 정부가 그 조사를 확실하게 하라고 요구할 때에도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제49조). 이외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조사할 수 있다. 조사내용은 문서로 보고서를 적성해야 한다(제50조). 또한 수석조사관은 그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조건을 보육 공급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된 조건

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다(제38조 제1항, 제3항).

### (3) 제3장 : 8세 이하의 유아에 대한 보육 공급의 규제

제3장은 5세부터 8세까지의 유아를 위한 보육에 관련한 등록, 조사, 규제 등을 담고 있다. 잉글랜드에서는 가정 내 보육 공급자로서 일반 보육 등록부의 part A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이 8세 이하의 유아에 대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등록된 보육 공급자들은 유아 보육 공급이 이 요구조건들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제52조). 하지만 정부는 명령을 통해 특정한 경우(예컨대, 특정인, 특정 아동, 보육의 본성, 그것이 제공되는 장소, 시간, 설비 등)에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제52조 제2항, 제3항)<sup>24)</sup>.

등록을 원하는 자는 수석조사관에게 등록신청을 하는데, 여기에는 기준에 규정된 정보, 수석조사관이 제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한 다른 정보, 기준에 정해진 등록비 등을 포함한다(제54조). 기준조사관은 그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조건을 보육 공급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된 조건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다(제58조 제1항, 제3항).

수석조사관은 정부가 요구한 시기에 유아 공급에 대해 조사해야 하며, 기타 적당하다고 판단되

\*\*\* -----

24) 이상의 등록규정은 가정 내 보육 공급자 이외의 다른 보육공급자에게도(약간의 차이를 두고) 적용된다(제54조).



는 시기에도 조사할 수 있다(제60조 제2항).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문서로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제61조).

(4) 제4장 : 자발적 등록

제4장은 자발적 등록(voluntary registration)의 절차와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람들의 규제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8살 이후의 아동에 대한 가정 내 보육을 공급하거나 공급할 계획이 있는 사람, 또는 아직 그 나이에 이르지 않은 영아 또는 유아에 대한 가정 내 보육을 공급하거나 공급할 계획이 있는데 제2장 또는 제3장에 의해 등록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일반 보육 등록부의 part B에 가정 내 보육공급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제62조 제1항). 이 신청서에는 기준이 정한 정보와 수석조사관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정보, 그리고 기준에 정한 등록비가 포함되어야 한다(제62조 제2항). 수석조사관은 제75조의 기준에 신청자가 해당하지 않고, 등록요구조건을 충족했거나 충족할 것이 예상되면 등록을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한다(제62조 제3항, 제4항). 등록요구사항으로는 신청자, 보육이 제공되거나 제공될 장소, 그 장소에서의 보육 설비, 그 장소에서 아동들을 돌보는 사람, 기타 그 장소에 있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 관한 요구조건을 포함한다(제62조 제5항)<sup>25)</sup>.

(5) 제5장 : 보육공급에서 공통사항

제5장은 모든 등록된 보육 공급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등록의 취소와 연기, 등록 자격의 박탈, 등록부에서의 말소 등에 관한 것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보육 공급자에 관한 정보의 공급과 관련하여 수석조사관이 보육장소출입권(rights of entry)과 기타 수석조사관의 권한과 의무 등도 규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등록비, 지방자치단체와 수석조사관 사이의 협력, 등록 증명서, 등록자가 수석조사관에게 통지하는 방법에 관한 것 등에 관한 세부 규정들도 있다.

4. Part 4 : 기타와 일반(제99조 ~ 제111조)

Part 4는 보육이 제공되는 아동들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것은 등록자격의 박탈을 다루는 아동법(Children Act 1989)의 부속서 9A의 제4조를 수정하고, 부속입법, 법률에 나오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 개시명령(commencement order)에 관한 일반 규정을 정하고 있다.

홍 성 수

(영국 주재 외국법제조사원)

\*\*\* -----

25) 이상의 등록규정은 가정 내 보육 공급자 이외의 다른 보육공급자에게도 (약간의 차이를 두고) 적용된다(63조).